

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복무점검 계획

1. 점검목적

- ☐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('19.3.10.~3.16.) 중 공사 직원의 복무 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복무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

2. 점검개요

- ☐ 점검기간 : '19. 3. 15.(금) [1영업일]
- ☐ 점검인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감사역
- ☐ 점검대상 : 부산, 서울 및 기타 지방 소재 35개 부서

구 분	대 상 부 서	비고
부산	○ 기획조정실, 혁신성과처, 인사처, 경영관리처, 홍보비서실, 정보운영처, 기금정보처, 주택도시금융연구원, 금융기획실, 심사평가처, 채권관리실, 보증이행처, 기금관리실, 기금지원처, 임대주택지원처, 기금대출지원센터, 리스크관리실, 도시재생기획처, 도시재생운영처, 도시재생지원처, PF금융1센터, PF금융2센터, 남부도시금융센터, 부산울산지사, 영남관리센터	25개 부서
서울	○ 서울북부관리센터, 정비사업금융1센터, 정비사업금융2센터, 동부도시금융센터, 서부도시금융센터, 임대주택금융1센터, 임대주택금융2센터, 서울북부지사	8개 부서
기타	○ 광주전남지사, 전북지사	2개 부서

※ 감사역별 업무분장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

3. 중점 점검사항

①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해태 행위

- 출·퇴근시간(유연근무자 포함) 미준수, 장시간 이석, 근무상황처리 미흡(근무지 이탈), 허위·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의무 미준수
- 복지부동, 무사안일, 소극 행정, 민원처리 지연·방치 등 업무해태

② 공직비위 및 품위훼손 행위

-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, 부정 청탁·알선, 성 비위 등 공직비위
- 음주소란, 갑질 행태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·언행
- 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
- 「청탁금지법」,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위반 행위

③ 보안 및 안전관리 미흡 사례

- 보안문서 방치·유출, 캐비넷 미 시건 등 문서관리 부적정 사례
- 일일보안일지 미작성, 컴퓨터, 모니터 등에 각종 비밀번호 노출, OTP 장치 방치, 고객정보 방치·유출 등 보안관리 부적정 사례
- 소관 외부 용역업체 보안통제 부적정 사례
- 중요인장·열쇠, 금고 등 관리 부적정 사례
- 사업장 안전관리, 비상대비 태세 등 점검

④ 기타 청렴·조직문화 저해 행위

- 위법·부당한 예산 사용 행위 (※ 2018년도 내부청렴도 취약 부문)
- 초과근무 강요,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행위

4. 점검결과 조치

☐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

-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조치

☐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 사내전산망 등록,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,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